

남 해 군

공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습니다.

선 람	기 관 의 장



제 559 호 2016. 5. 20(금)

조 례

남해군조례 제2176호	남해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1
남해군조례 제2177호	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	4

공 고

제2016 - 383호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11
제2016 - 405호	남해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15

회 람									
-----	--	--	--	--	--	--	--	--	--

발행 : 남해군

편집 : 기획감사실(860-3046, 행정 3046)

조 례

남해군 조례 제2176호

남해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6년 5월 20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남해군 부동산평가위원회 조례” 를 “남해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운영 조례” 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25조에 따라 설치되는 남해군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제1항 중 “위원회는 위원장” 을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으로 하고 “구성한다.” 를 “구성하되, 특정 성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를 “개별공시지가 업무 담당 부서장이 된다” 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위원회의 당연직 위원은 개별공시지가 및 개별주택가격 업무 담당 부서장으로 하고, 그 밖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2조제3항제1호 중 “지역사정” 을 “해당 지역사정” 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시민단체(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에 따른 비영리민간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제2조제3항제3호를 삭제한다.

제3조제2항 중 “사고가 있을” 을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로 한다.
제4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7호 및 제8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6.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의 결정에 관한 사항
- 7. 비주거용 개별부동산가격에 대한 이의신청에 관한 사항
- 8.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5조 중 “위촉위원” 을 “위촉직 위원” 으로 하고, “있다” 를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로 하며, 같은 조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해당 직위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제6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다음 각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전이라도” 를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당” 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 1. 위원이 사망, 질병 또는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 2. 위원회의 자문업무와 관련하여 알게 된 기밀 등을 누설하거나 민원을 일으킨 경우
- 3. 위원 스스로 사임을 원할 경우
- 4. 그 밖에 위원으로서의 품위손상 등 직무를 수행하는데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6조제5호를 삭제한다.

제6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2(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제척된다.

- 1. 해당 안건이 본인, 배우자 및 친족과 관련이 있는 경우
- 2.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해서 증언, 진술, 자문, 조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 3. 그 밖에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해당 안건의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7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① 회의는 매년 한 차례 이상 소집함을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로 소집할 수 있으며, 회의개최 3일 전까지 의안을 첨부하여 각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할 수 있고 회의의 의장이 되며, 회의는 출석 회의를 원칙으로 하나 심의안건이 경미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다.

제7조제4항 중 “제1항 내지 제3항 외에” 를 “그 밖에” 로 한다.

제8조 중 “인정하는 경우에는” 을 “인정하면” 으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1인과 서기 1인” 을 “2명과 서기 2명” 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간사는 개별공시지가 업무 팀장 또는 개별주택가격 업무 팀장이 되고 서기는 개별공시지가 업무 담당자 또는 개별주택가격 업무 담당자가 맡는다.

부칙

이 조례는 2016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남해군 조례 제2177호

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의회에서 의결된 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한다.

2016년 5월 20일

남 해 군 수

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개정조례

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 "해양레포츠"란 바다에서 즐기는 스포츠를 말한다.

7. "마리나업"이란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마리나 대여 등의 업을 말한다.

제7조제1항 중 “60%”를 “60 퍼센트”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호선하고”를 “선출하고”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은 경제과장,”을 “위원은”으로 하고, 같은 조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④ 위원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 해산한다.

제7조제5항을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중 “경기대회·전시회”를 “경기대회·체험행사”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해양레저”를 “체육단체, 경기단체 및 해양레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는 해양레포츠 대회 개최시 예산의 범위에서 시상금 및 부상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26조제3항제1호 및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1월 1일, 매주 월요일
2. 설날 및 추석 연휴기간

제28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군수는 제2항에 의하여 마리나업으로 허가 받은 자와 필요시 별도로 세부사항을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33조제5항 중 “10일” 을 “5일” 로 한다.

제37조제1항제4호 중 “전시회” 를 “체험행사” 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표 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앞면] (제27조 관련)

남해군요트학교 수강신청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HP :)					
신청구분	교육	<input type="checkbox"/> 덩기(1일)		<input type="checkbox"/> 덩기(2일)		<input type="checkbox"/> 덩기(3일)	
		<input type="checkbox"/> 크루저(초급)		<input type="checkbox"/> 크루저(중급)		<input type="checkbox"/> 크루저(고급)	
	체험	<input type="checkbox"/> 크루저 체험					
교육·체험 망시기	회기	덩기·크루저 교육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일간)				
		크루저 체험	일자	20 년 월 일			
	시간		<input type="checkbox"/> 10:00 <input type="checkbox"/> 11:30 <input type="checkbox"/> 14:00 <input type="checkbox"/> 15:30 <input type="checkbox"/> 기타()				
교육·체험인원	덩기교육	명					
	크루저교육	명					
	크루저체험	명(36개월 미만 영유아 명)					
수강료감면 신청인원	<input type="checkbox"/> 남해군에 주소를 둔 군민(명) <input type="checkbox"/> 남해군내 초·중·고·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명) <input type="checkbox"/> 남해군내 숙박업소에서 숙박한 관광객(명) <input type="checkbox"/> 기타(명)						

「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조례」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 신청하며, 수강 시 준수사항을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남해군수 귀하

구비서류 : 감면대상자는 신분증 또는 확인 서류 제출

[별지 제1호 서식 뒷면] (제27조 관련)

남해군요트학교 수강 시 준수사항

1. 요트교육 및 크루저체험 시 음주를 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로 수강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다른 사람들에게 위해를 주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인화물질 및 흥기 등을 소지하여서는 안 됩니다.
3. 크루저체험 시 구명복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보호자를 동반하여야 합니다. 또한, 반려동물을 데리고 탑승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정된 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4. 선장 및 강사, 안전요원의 지시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5. 수강자의 부주의로 물품 및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재산상 피해를 끼쳤을 경우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남해군요트학교 수강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수강신청·승인 및 수강료 징수,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정책자료 활용(사업관련 각종 설문조사 포함)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초상권**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5년

동의함 동의안함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남해군요트학교 수강신청 및 수강료 징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관련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주의사항 : 귀하는 상기 1 ~ 2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수강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의자 성명

(서명)

[별지 제2호 서식 앞면] (제27조 관련)

남해군요트학교 수강 변경신청서

신청인	성명 (법인명)		생년월일 (법인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 (H·P :)		
당초 승인 내역	교육	구분	<input type="checkbox"/> 덩기(1일) <input type="checkbox"/> 덩기(2일) <input type="checkbox"/> 덩기(3일) <input type="checkbox"/> 크루저(초급) <input type="checkbox"/> 크루저(중급) <input type="checkbox"/> 크루저(고급)	
		일자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일간)	
		인원	명	
	체험	구분	크루저 체험	
		일시	20 년 월 일[<input type="checkbox"/> 10:00 <input type="checkbox"/> 11:30 <input type="checkbox"/> 14:00 <input type="checkbox"/> 15:30 <input type="checkbox"/> 기타()]	
		인원	명	
변경 신청 내역	교육	구분	<input type="checkbox"/> 덩기(1일) <input type="checkbox"/> 덩기(2일) <input type="checkbox"/> 덩기(3일) <input type="checkbox"/> 크루저(초급) <input type="checkbox"/> 크루저(중급) <input type="checkbox"/> 크루저(고급)	
		일자	20 년 월 일 ~ 20 년 월 일(일간)	
		인원	명	
	체험	구분	크루저 체험	
		일시	20 년 월 일[<input type="checkbox"/> 10:00 <input type="checkbox"/> 11:30 <input type="checkbox"/> 14:00 <input type="checkbox"/> 15:30 <input type="checkbox"/> 기타()]	
		인원	명	
수강료감면 신청인원		<input type="checkbox"/> 남해군에 주소를 둔 군민(명) <input type="checkbox"/> 남해군내 초·중·고·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명) <input type="checkbox"/> 남해군내 숙박업소에서 숙박한 관광객(명) <input type="checkbox"/> 기타(명)		

「남해군 해양레저산업 육성조례」 제27조에 따라 위와 같이 수강신청하며, 수강시 준수사항을 지킬 것을 약속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남해군수 귀하

구비서류 : 감면대상자는 신분증 또는 확인 서류 제출

[별지 제2호 서식 뒷면]

남해군요트학교 수강 시 준수사항

1. 요트교육 및 크루저체험 시 음주를 하거나 술에 취한 상태로 수강을 받을 수 없습니다.
2. 다른 사람들에게 해를 주는 행동을 하여서는 아니 되며, 인화물질 및 흉기 등을 소지하여서는 안 됩니다.
3. 크루저체험 시 구명복을 반드시 착용하여야 하며, 14세 미만의 청소년은 보호자를 동반하여야 합니다. 또한, 반려동물을 데리고 탑승하여서는 아니 되며, 지정된 자리를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4. 선장 및 강사, 안전요원의 지시를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5. 수강자의 부주의로 물품 및 시설물 등을 훼손하거나 재산상 피해를 끼쳤을 경우 에는 그에 상당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1. 개인정보의 수집·이용에 관한 사항

남해군요트학교 수강신청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관련 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 수강신청·승인 및 수강료 징수, 중앙정부·지방자치단체의 정책자료 활용(사업관련 각종 설문조사 포함)
-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초상권**
-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기간 : 수집·이용 동의일로부터 5년

동의함 동의안함

2. 고유식별정보의 처리에 관한 사항

남해군요트학교 수강신청 및 수강료 징수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귀하의 고유식별정보(생년월일)를 처리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4조에 따라 관련사항을 알려드리오니, 동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함 동의안함

※주의사항 : 귀하는 상기 1 ~ 2번 사항에 대하여 각각 동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에 대한 동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득이하게 수강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동의자 성명

(서명)

[별표 2] (제30조 관련)

계류장 사용료

시설별	사용구분	사 용 료		비고	
		규 격	금 액(원)		
요 트 계 류 장	일 시 사 용 (척 / 일)	길이 5m 미만	6,000		
		길이 5m 이상 7m 미만	10,000		
		길이 7m 이상 10m 미만	16,000		
		길이 10m 이상	24,000		
	상 시 사 용 (척 / 월)	길이 5m미만	100,000		
		길이 5m이상 6m미만	110,000		
		길이 6m이상 7m미만	130,000		
		길이 7m이상 8m미만	160,000		
		길이 8m이상 9m미만	180,000		
		길이 9m이상 10m미만	200,000		
		길이 10m이상 11m미만	230,000		
		길이 11m이상 12m미만	260,000		
		길이 12m이상 13m미만	300,000		
		길이 13m이상 14m미만	320,000		
		길이 14m이상	360,000		
	비 고	<p>“일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15일 이내를 말하고, “상시사용”이란 사용기간이 월 16일 이상을 말하며, 상시사용의 경우 그 기간을 1개월로 본다.</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계류장 사용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가격이다. - 요트길이 14m 이상 요트에 대한 사용료는 별도의 계약을 할 수 있다. 			

공 고

남해군 공고 제2016 - 383호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 일부개정 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를 일부개정 함에 있어 그 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3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남해군 해수욕장 관리 조례

2. 개정이유

물가 인상에 따른 해수욕장 시설 사용료를 현실화 하여 주요 위탁단체인 해수욕장 변영회의 재정 건전성을 보장하고, 원활한 해수욕장의 관리를 이루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제11조(해수욕장시설 사용료)제1항의 [별표 2]

1. 해수욕장 사용료 및 대여료

시설명	구분	기준	사용료(기존)	사용료(개정안)
야영장	텐트형	1일	6,000원	8,000원
	천막형		10,000원	13,000원

2. 오토캠핑장 시설사용료

시설별	사용기준(면적)	사용료	사용료(개정안)	비고
텐트사이트	1개소당	20,000원	캠핑카 20,000원	
			카라반 30,000원	

4.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01일 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주소 : ☎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해양수산과
- 연락처 : 전화055-860-3375, 팩스860-3709, e-mail: yemeak1205@korea.kr

[관 련 법 령]

「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사용료의 징수) ① 관리청은 해수욕장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해수욕장시설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용료의 금액과 그 징수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남해군 공고 제2016 - 405호

남해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

「남해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조례」를 개정함에 있어 그 주요내용과 취지를 군민에게 미리 알려 의견을 듣고자 「행정절차법」 제41조 및 법제업무운영규정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6년 5월 18일

남 해 군 수

1. 자치법규명

남해군 계획 조례

2. 개정이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사항 반영 및 현행 조례의 개발행위허가 기준과 용도지역 안에서의 건축 제한사항을 완화 정비 하여 우리 군 실정에 맞게 개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사항 반영

-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안에서 야영장 시설 가능하도록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시설을 신설
- 수련시설이 가능한 용도지구에는 야영장 시설도 가능
 -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포함)

나. 개발행위허가의 기준 완화정비(안 제16조 제1항)

- 개발행위허가 대상 토지에 대해서만 입목본수도가 60퍼센트 미만으로 완화
- 【별표 24】 입목본수도 조사대상 수목 : 직경 1센티미터 → 직경 6센티미터

다.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완화 정비(안 제38조 제2항 신설)

-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공장
 -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

- 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군수와 미리 협의하였을 것

-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 가능한 공장
 -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라. 용도지역안에서의 건축 제한사항 완화 정비(안 제26조 제1호 내지 제23호)

- 별표 3 사, 별표 4 바, 별표 5 바, 별표 12 아, 별표 18 아, 별표 20 마, 별표 22 자목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포함) 수정
- 별표 3 카목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공장 관련 신설
- 별표 14 파, 별표 17 하목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신설
- 별표 22 바목 및 별표 23 아목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의 요양병원 추가
- 별표 1 내지 별표 23 : 일부 내용의 수정 보완

마. 개발진흥지구 내의 자연녹지지역의 건폐율 신설 (안 제41조제1항제2호)

- 도시지역외의 지역은 40퍼센트 이하로 하고, 자연녹지지역은 30퍼센트 이하로 한다.

바. 기타 군계획조례 운영상 미비점 보완

4. 의견제출

가. 이 자치법규의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16년 6월 8일까지 다음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남해군수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입법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서(찬·반여부와 그 사유 및 대안)
- 성명(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

나. 의견 제출처

- 주소 : 우52425, 남해군 남해읍 망운로9번길 12 남해군청 도시건축과
- 연락처 : 전화 055-860-3413, 팩스 860-3739, e-mail : dongak@korea.kr

남해군 조례 제 호

남해군 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남해군 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1호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입목본수도가 60퍼센트 미만인 경우

제16조제1항제1호나목을 삭제하고, 제16조제1항제2호 단서 중 “자문을” 을 “심의
를” 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자문을” 을 “심의를” 로 한다.

제18조의 제목 “(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를 “(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른 안
전조치)” 로 한다.

제38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다.

②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
을 말한다)에 따라 영 제79조제3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제41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별표 1에서 별표 24까지 별지와 같이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제1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6조제1호 관련)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중 다가구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연립주택 및 다세대주택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사목(공중화장실·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 및 지역아동센터만 해당한다) 및 아목에 따른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 [박물관·미술관 및 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 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2】

제2종전용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6조제2호 관련)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 [박물관·미술관 및 체험관(「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6호에 따른 한옥으로 건축하는 것만 해당한다) 및 기념관에 한정한다] 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인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초등학교·중학교 및 고등학교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별표 3】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6조제3호 관련)

※ 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 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공연장 및 관람장을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 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은 제외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영 별표 4 제1호 라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육외 철탑이 설치된 골프연습장을 제외한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인쇄업, 기록매체복제업, 봉제업(의류편조업을 포함한다), 컴퓨터 및 주변기기제조업, 컴퓨터 관련 전자제품조립업, 두부제조업, 세탁업의 공장 및 지식산업센터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 내지 4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6) 「소음·진동관리법」 제7조에 따른 배출허용기준의 2배 이상인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 1)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 2)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
- 3) 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관계획조로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 허가신고 대상 시설의 건축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건축제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4) 군수가 관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주차장 및 세차장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화초 및 분재 등의 온실

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 시설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6조제4호 관련)

※ 단, 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제곱미터 미만인 것(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 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은 제외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영 별표 5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 중 오피스텔·금융업소·사무소 및 같은 호 가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 자. 이 조례 별표 3 차목의 공장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것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 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6조제5호 관련)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관람장을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다목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2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 (너비 15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과 기존의 도매시장 또는 소매시장을 재건축하는 경우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의 4배 이하 또는 대지면적의 2배 이하인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격리병원은 제외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영 별표 6 제1호 마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로서 그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천 제곱미터 이하인 것
- 자. 이 조례 별표 3 차목의 공장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주유소, 석유판매소, 액화가스 취급소·판매소, 도료류 판매소,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의 연료공급시설, 시내버스차고지에 설치하는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과 주차장 및 세차장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것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 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별표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6조제6호 관련)**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안마시술소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6조제7호 관련)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6조제8호 관련)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군사 시설(국방·군사시설은 제외한다)

【별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6조제9호 관련)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 관련 시설 중 같은 호 아목에 해당하는 것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6조제10호 관련)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6조제11호 관련)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산업전시장 및 박람회장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해당 전용공업지역에 소재하는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을 판매하는 경우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 제2조제3호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과 그 밖에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직업능력개발훈련법인이 직업능력개발훈련을 실시하기 위하여 설치한 시설에 한정한다)·학원(기술계학원에 한정한다) 및 연구소(공업에 관련된 연구소, 「고등교육법」에 따른 기술대학에 부설되는 것과 공장대지 안에 부설되는 것에 한정한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 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별표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6조제12호 관련)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 중 기숙사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4호의 업무시설(일반업무시설로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13호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하는 지원시설에 한정한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 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6조제13호 관련)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설

【별표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6조제14호 관련)**

※ 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 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의 단독주택(다가구주택을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인 것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라목에 해당하는 것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 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6조제15호 관련)

※ 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 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 제곱미터 미만인 것(단란주점을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중학교·고등학교·교육원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정한다)·직업훈련소 및 연구소(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연구소로 한정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식품공장· 제1차 산업생산품 가공공장 및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제2호 마목의 첨단업종의 공장(이하 “첨단업종의 공장” 이라 한다)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에 해당하는 것
 - 5) 「폐기물관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지정폐기물을 배출하는 것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6조제16호 관련)

※ 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 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 하여금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것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및 생산자단체,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자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정한다)
- 3) 지식경제부장관이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형할인점 및 중소기업공동판매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 및 한방병원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직업훈련소 및 학원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첨단업종의 공장, 지식산업센터,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이 조례 별표 15 아목 1)부터 5)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2)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사업 및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으로 남해군지역으로 이전하는 레미콘 또는 아스콘공장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별표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6조제17호 관련)

※ 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 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휴게음식점 및 제과점을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중 종교집회장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만 해당한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가목 및 마목에서 아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6조제18호 관련)

※ 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 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호 바목 및 사목 중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및 더목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것
-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 한다.
-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3에 따른 1종사업장부터 4종사업장까지 해당하는 것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중 같은 호 사목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부터

라목까지 해당하는 것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별표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6조제19호 관련)

※ 시행령 별표 20 제1호의 규정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외
따로 정하는 바 없음

【별표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6조제20호 관련)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바목에 해당하는 것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호 아목, 자목, 너목, 더목 및 러목(안마시술만 해당한다)은 제외한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중 같은 호 마목에 해당하는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에서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의 교정 및 국방·군사 시설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4호의 방송통신시설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8호의 장례식장

[비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6조제21호 관련)

※ 단, 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고 정화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가목·바목·사목(지역아동센터는 제외한다) 및 아목에 해당하는 것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종교집회장으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로서 지목이 종교용지인 토지에 건축하는 것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마목에서 아목 까지에 해당하는 것과 양어시설(양식장을 포함한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3호 라목의 국방·군사시설 중 군수가 입지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범위에서 건축하는 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5호의 발전시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별표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6조제22호 관련)

※ 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 1)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농수산물공판장
- 2) 「농수산물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제68조제2항에 따른 농수산물직판장으로서 해당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만 제곱미터 미만인 것(「농어법·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어업인, 같은법 법 제25조에 따른 후계농어업경영인,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전업농어업인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것에 한한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 및 한방병원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1호의 노유자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로서 「관광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관광지 및 관광단지에 건축하는 것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 및 첨단업종의 공장으로서 이 조례 별표 18 제1호 자목 1)부터 4)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2호의 자원순환 관련 시설

【별표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6조제23호 관련)

※ 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규칙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에 한한다.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아파트를 제외한다)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휴게음식점 및 제과점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단란주점을 제외한다)
-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5호의 문화 및 집회시설
-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6호의 종교시설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판매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에 한한다)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8호의 운수시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 및 한방병원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같은 호 다목부터 마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제곱미터 이하이고 3층 이하로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타. 이 조례 별표 18 자목의 공장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 거.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0호의 자동차관련시설
- 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6호의 묘지관련시설
- 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휴게시설

【별표 24】

입목본수도 조사방법 (제16조 관련)

1. 입목본수도 정의

현재 자라고 있는 입목의 본수나 재적을 그 임지의 적절한 본수나 재적에 대한 비율(100분율)로 나타낸 것임.

2. 입목본수도 조사방법

가. 조사 대상지를 현지 답사하여 구획을 확인하고, 경계를 표시한다.

나. 조사구역의 입목을 전수 조사한다.

(1) 조사야장 양식

가슴높이직경 (cm)	계	측정본수	비고
총 계			

(2) 조 편성

기장자 1명에 측정자 1~2명으로 1조를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3) 기재요령

- ① 가슴높이직경은 입목본수기준표의 기준에 따라 기재한다.
- ② 측정본수는 수종에 상관없이 정(正)자로 표시한 후 합계를 계산한다.

(4) 가슴높이직경 측정

- ① 가슴높이직경의 측정은 경사지에서는 위쪽에서, 평지에서는 임의의 방향에서 지상 1.2미터(가슴높이)의 높이를 측정한다. 측정은 교목, 관목, 죽(대나무)을 구분하지 않고 수고 1.2미터 이상이면서 **직경 6센티미터** 이상인 모든 수목을 대상으로 한다.
- ② 지상 1.2미터의 위치가 측정자의 신체 어느 부분인가를 미리 조사해 두어야 한다.
- ③ 가슴높이점의 하부에서 수간이 분지되어 있으면 각각 2분으로 간주하여 따로 측정하고, 가슴높이점보다 상부에서 분지되어 있으면 1분으로 간주한다.
- ④ 가슴높이점에 혹 또는 웅이 등이 있을 때에는 이 점 상하의 가슴높이 직

경을 측정하여 평균치를 사용한다.

- ⑤ 수목이 많아 측정대상 수목에 대해 혼동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오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측정한 수목을 분필, 노끈 등을 이용하여 표시하여야 한다.

(5) 산출방법

- ① 측정이 끝나면 각 직경별 본수에 평균직경을 곱하여 직경 소계를 구하고 직경 소계를 합산하여 직경 총계를 구한다.
- ② 직경 총계를 대상지의 전체 본수로 나누어 평균 가슴높이직경을 구한다.
- ③ 입목본수기준표에 의거 대상지 수목의 평균 가슴높이직경에 의거되는 ha당 정상 입목본수를 m²당 입목본수로 환산한다.
- ④ 대상지 정상입목본수(본) = 대상지면적(m²) × 정상입목본수(본 / m²)

⑤ 입목(본수)도(%) = $\frac{\text{대상지 현재 생육본수}}{\text{대상지 정상 입목본수}} \times 100$

3. 입목본수 기준표

가슴높이직경	ha당 정상 입목본수	가슴높이직경	ha당 정상 입목본수	가슴높이직경	ha당 정상 입목본수
(cm)	(본)	(cm)	(본)	(cm)	(본)
3미만	3,000	15이상 17미만	820	29이상 31미만	390
3이상 5미만	2,350	17이상 19미만	730	31이상 33미만	360
5이상 7미만	2,040	19이상 21미만	630	33이상 35미만	330
7이상 9미만	1,740	21이상 23미만	570	35이상 37미만	300
9이상 11미만	1,400	23이상 25미만	510	37이상 39미만	280
11이상 13미만	1,150	25이상 27미만	470	39이상 41미만	260
13이상 15미만	980	27이상 29미만	430	41이상	240

[예 시]

매목조사야장

조사일시 :

조 사 자 : (직)

(성명) 000

가슴높이직경(cm)	계	본 수	비 고
07이상 09미만	25	正正正正正	
09이상 11미만	21	正正正正一	
11이상 13미만	15	正正正	
13이상 15미만	6	正一	
15이상 17미만	1	一	
17이상 19미만	1	一	
총 계	69		

□ 입목본수도 산출

구 분	평균직경	총 계	8cm	10cm	12cm	14cm	16cm	18cm
본 수		69	25	21	15	6	1	1
직경소계		708	200	210	180	84	16	18

- 대상지 면적 : 1000 m²
- 평균 가슴높이직경 : 708cm ÷ 69본 = 10.3cm
- 10cm, 1ha 당 정상 입목본수 : 1,400본 (m²당 0.14본)
- 대상지 정상 입목본수 : 1,000 m² × 0.14본/m² = 140본
- 입목본수도 : (69본 ÷ 140본) × 100 = 49.3%

4. 기타사항

- 입목본수도 조사방법(제16조 관련)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1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영 별표 1의2 제1호에 따라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토지에 한정하여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p> <p>1. 다음 각 목의 입목본수도 요건을 갖춘 토지. 다만, 판매를 목적으로 재배하는 나무는 입목본수도 산정시 이를 산입하지 아니한다.</p> <p>가.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 및 당해 토지의 경계로부터 50미터이내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총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p> <p>나.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중심부로부터 경계까지의 거리의 50퍼센트의 거리 안에 위치하는 주변토지의 입목본수도가 50퍼센트 미만인 경우</p> <p>2. 경사도가 25도 미만인 토지. 다만, 경사도가 25도 이상인 토지에 대해서는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경사도 산정방식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p> <p>2의2. (생 략)</p> <p>3. 기준지반고(개발행위 대상 토지를 중심으로 직선거리로 가장 가까운 농어촌도로급 이상의 도로 표고를 말한다)를 기준으로 50미터 미만에 위치하는 토지(다만, 50미터 이상인 경우 군계획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허가할 수 있다.)</p>	<p>제16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 ① -----</p> <p>-----</p> <p>-----.</p> <p>1 -----</p> <p>-----.</p> <p>-----.</p> <p>가. 개발행위허가 대상토지의 입목본수도가 60퍼센트 미만인 경우</p> <p><삭 제></p> <p>2 -----.</p> <p>----- 심의를 -----.</p> <p>-----.</p> <p>2의2. (현행과 같음)</p> <p>3 -----</p> <p>----- 심의를 -----</p>

4. (생 략)

② (생 략)

제18조(토지의 형질변경시 안전조치) (생 략)

제38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생 략)

<신 설>

제41조(그 밖에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① 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용도지구·용도구역 등의 건폐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생 략)

2. 도시지역외의 지역에 지정된 개발진흥지구 : 40퍼센트 이하

3. ~ 6. (생 략)

② ~ ⑤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18조(토지의 형질변경에 따른 안전조치) (현행과 같음)

제38조(개발진흥지구 안에서의 건축제한) ① (현행과 같음)

②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외에 영 제79조제3항에 따른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제41조(그 밖에 용도지구·구역 등의 건폐율) ① _____

--.

1. (현행과 같음)

2. 개발진흥지구 :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 40퍼센트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 30퍼센트

3. ~ 6. (현행과 같음)

② ~ ⑤ (현행과 같음)

신 · 구 별표대비표

현행	개정안
<p>【별표 1】 제1종전용주거<u>지역에서</u>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6조제1호 관련) 가. ~ 자. (생략)</p> <p>【별표 2】 제2종전용주거<u>지역에서</u>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6조제2호 관련) 가. ~ 바. (생략)</p> <p>【별표 3】 제1종일반주거<u>지역에서</u>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6조제3호 관련) ※ 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 한다. 가. ~ 바. (생략)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아. ~ 자. (생략) 차. (생략)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하는 것 2) (생략)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 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 6) (생략) 카. <신 설></p>	<p>【별표 1】 제1종전용주거<u>지역안에서</u>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6조제1호 관련) 가. ~ 자. (현행과 같음)</p> <p>【별표 2】 제2종전용주거<u>지역안에서</u>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6조제2호 관련) 가. ~ 바. (현행과 같음)</p> <p>【별표 3】 제1종일반주거<u>지역안에서</u>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6조제3호 관련) ※ 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 한다. 가. ~ 바. (현행과 같음)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아. ~ 자. (현행과 같음) 차. (현행과 같음)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에 따른 특정대기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2) (현행과 같음)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이 같은 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1호에 따른 기준 이상으로 배출되는 것. 다만, 같은 법 제34조에 따라 폐수무방류배출시설의 설치허가를 받아 운영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4) ~ 6) (현행과 같음)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1)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p>

- 카. (생 략)
- 타. (생 략)
- 파. (생 략)
- 하. (생 략)
- 거. (생 략)
- 너. (생 략)
- 더. (생 략)

【별표 4】

제2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6조제4호 관련)

※ 단, 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 한다.

- 가. ~ 마. (생 략)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사. ~ 너. (생 략)

【별표 5】

제3종일반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6조제5호 관련)

- 가. ~ 마. (생 략)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사. ~ 너. (생 략)

【별표 6】

준주거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26조제6호 관련)

- 1. 시행령 별표 7호 제1호 다목에 따라 건축할 수

- 2)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
- 3) 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군계획조로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 허가·신고 대상 시설의 건축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건축제한시설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4) 군수가 군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
- 타. (현행과 같음)
- 파. (현행과 같음)
- 하. (현행과 같음)
- 거. (현행과 같음)
- 너. (현행과 같음)
- 더. (현행과 같음)
- 러. (현행과 같음)

【별표 4】

제2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6조제4호 관련)

※ 단, 15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 가. ~ 마. (현행과 같음)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사. ~ 너. (현행과 같음)

【별표 5】

제3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6조제5호 관련)

- 가. ~ 마. (현행과 같음)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하되, 유스호스텔의 경우 너비 12미터 이상의 도로에 접한 대지에 건축하는 것에 한한다)
- 사. ~ 너. (현행과 같음)

【별표 6】

준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26조제6호 관련)

- 1. <삭 제>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 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시행령 별표 7호에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생략)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 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

다. (생략)

【별표 7】

중심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6조제7호 관련)

1. 시행령 별표 8호 제1호의 나목 및 다목, 라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생략)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시행령 별표 8호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병원

나. (생략)

다. (생략)

라. (생략)

【별표 8】

일반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6조제8호 관련)

가. <삭 제>

2. <삭 제>

가. (현행과 같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생활숙박시설로서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의하여 주택 밀집지역과 차단되거나 주택 밀집 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다. (현행과 같음)

【별표 7】

중심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6조제7호 관련)

1. <삭 제>

가. (현행과 같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격리 병원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 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 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삭 제>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 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 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 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마. (현행과 같음)

바. (현행과 같음)

사. (현행과 같음)

【별표 8】

일반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6조제8호 관련)

1. 시행령 별표 9호 제1호의 가목 및 나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시행령 별표 9호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나. (생략)

【별표 9】

근린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6조제9호 관련)

1. 시행령 별표 10호 제1호의 나목 및 다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시행령 별표 10호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1. <삭 제>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삭 제>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현행과 같음)

【별표 9】

근린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6조제9호 관련)

1. <삭 제>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의 공동주택[공동주택과 주거용 외의 용도가 복합된 건축물(다수의 건축물이 일체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건축물을 포함한다)로서 공동주택 부분의 면적이 연면적의 합계의 90퍼센트 미만인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삭 제>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현행과 같음)

- 다. 다
- 나. (생략)
- 다. (생략)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26조제10호 관련)

1. 시행령 별표 11호 제1호의 라목 및 마목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
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
(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
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시행령 별표 11호 제2호에 따라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
설

【별표 11】

**전용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6조제11호 관련)**

- 가. (생략)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
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자목 및 타목(기원만
해당한다) 및 러목에 해당하는 것
- 다. ~ 차 (생략)

【별표 12】

일반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6조제12호 관련)

- 가. ~ 나. (생략)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
활시설 중 안마시설소

마. (현행과 같음)

【별표 10】

**유통상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6조제10호 관련)**

1. <삭 제>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5호의 숙박시설 중
일반숙박시설 및 생활숙박시설(공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단되거나 주거지
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
하는 것은 제외한다)

2. <삭 제>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6호의 위락시설(공
원·녹지 또는 지형지물에 따라 주거지역과 차
단되거나 주거지역으로부터 20미터 거리 밖에
있는 대지에 건축하는 것은 제외한다)

라.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시
설

【별표 11】

**전용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6조제11호 관련)**

- 가. (현행과 같음)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
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
- 다. ~ 차. (현행과 같음)

【별표 12】

일반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26조제12호 관련)

- 가. ~ 나. (현행과 같음)
- 다. <삭 제>

- 라. (생 략)
- 마. (생 략)
- 바. (생 략)
- 사. (생 략)
- 아. (생 략)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 차. (생 략)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 타. (생 략)
- 파. (생 략)
- 하. (생 략)

【별표 13】

준공업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26조제13호 관련)

- 1.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 시설
- 2.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별표 14】

보전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6조제14호 관련)

※ 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 한다

- 가. ~ 타. (생 략)
- 파. <신 설>

【별표 15】

생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6조제15호 관련)

※ 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 한다.

- 가. ~ 바. (생 략)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 아. (생 략)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 (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 차. ~ 카. (생 략)

- 다. (현행과 같음)
- 라. (현행과 같음)
- 마. (현행과 같음)
- 바. (현행과 같음)
- 사. (현행과 같음)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 자. (현행과 같음)
-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 카. (현행과 같음)
- 키. (현행과 같음)
- 타. (현행과 같음)

【별표 13】

준공업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
(제26조제13호 관련)

-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단란주점 및 안마시술소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7호의 관광 휴게 시설

【별표 14】

보전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6조제14호 관련)

※ 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 한다.

- 가. ~ 타. (현행과 같음)
-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5】

생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6조제15호 관련)

※ 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 한다.

- 가. ~ 바. (현행과 같음)
-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 아. (현행과 같음)
-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창고
- 차. ~ 카. (현행과 같음)

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다목 및 라목에 해당하는 것

- 파. (생 략)
- 하. (생 략)
- 거. (생 략)

【별표 16】

자연녹지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6조제16호 관련)

※ 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 한다.

- 가. (생 략)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아목·자목 및 러목(안마시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 다. ~ 차. (생 략)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참고(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으로 쓰는 것은 제외한다)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 타. ~ 파. (생 략)

【별표 17】

보전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6조제17호 관련)

※ 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 한다.

- 가. ~ 파. (생 략)
- 하. <신 설>

【별표 18】

생산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6조제18호 관련)

※ 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 한다.

- 가. (생 략)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가목나목·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 다. ~ 마. (생 략)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에 한한다)

타. <삭 제>

- 타. (현행과 같음)
- 파. (현행과 같음)
- 하. (현행과 같음)

【별표 16】

자연녹지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6조제16호 관련)

※ 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 한다.

- 가. (현행과 같음)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
- 다. ~ 차. (현행과 같음)
-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 가목의 참고 및 같은 호 라목의 집배송시설
- 타. ~ 파. (현행과 같음)

【별표 17】

보전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6조제17호 관련)

※ 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 한다.

- 가. ~ 파. (현행과 같음)
-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8】

생산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6조제18호 관련)

※ 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 한다.

- 가. (현행과 같음)
-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같은 호 바목 및 사목 중 마을회관, 마을공동작업소, 마을공동구판장, 지역아동센터(단독주택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등 주민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시설]
- 다. ~ 마. (현행과 같음)
-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의 교육연구시설 중 유치원·중학교·고등학교 및 교육원(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과 관련된 교육시설(나목 및 다목에도 불구하고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등이

사. (생략)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 4) (생략)

차. ~ 니. (생략)

【별표 19】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6조제19호 관련)

※ (생략)

【별표 20】

농림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6조제20호 관련)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같은 호 나목, 사목(공중화장실, 대피소,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만 해당한다) 및 아목은 제외한다]

나. ~ 라. (생략)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사.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9호의 위험물저장 및 처리시설 중 액화석유가스충전소 및 고압가스충전·저장소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같은 호 마목부터 아목에 해당하는 것을 제외한다)

자. ~ 파. (생략)

[비고] <신설>

같은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내에서 교육시설과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또는 제과점을 함께 설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한정한다]

사. (현행과 같음)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제조업소를 포함한다)중 도정공장 및 식품공장과 읍·면지역에 건축하는 제재업의 공장으로서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

1) ~ 4) (현행과 같음)

차. ~ 니. (현행과 같음)

【별표 19】

계획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없는 건축물(제26조제19호 관련)

※ (현행과 같음)

【별표 20】

농림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6조제20호 관련)

가.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3호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바목에 해당하는 것

나. ~ 라. (현행과 같음)

마. <삭제>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사. <삭제>

바.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1호의 동물 및 식물관련시설 중 같은 호 가목에서 라목까지에 해당하는 것

사. ~ 파. (현행과 같음)

[비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6조제5항제3호에 따라 농림지역 중 농업진흥지역, 보전산지 또는

초지인 경우에 건축물이나 그 밖의 시설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제한에 관하여는 각각 「농지법」, 「산지관리법」 또는 「초지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6조제21호 관련)

※ 단, 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고 정화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건축물에 한 한다.
가. ~ 사. (생 략).

【별표 22】

자연취락지구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6조제22호 관련)

※ 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 한다
가. (생 략)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아목, 자목 및 러목(안마미술소만 해당한다)에 따른 제2종 근린생활시설
다. ~ 라. (생 략)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바. ~ 사. (생 략)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

차. ~ 다. (생 략)
차. (생 략)

【별표 23】

관리지역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6조제23호 관련)

※ 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규칙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에 한한다.
가. ~ 사. (생 략)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 및 한방병원
자. (생 략)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운동장을 제외한다)

【별표 21】

자연환경보전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6조제21호 관련)

※ 단, 수질오염 및 경관 훼손의 우려가 없고 정화시설 등 수질오염 방지시설을 갖춘 건축물에 한한다.
가. ~ 사.(현행과 같음)

【별표 22】

자연취락지구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6조제22호 관련)

※ 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한다.
가. (현행과 같음)
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4호의 제2종 근린생활시설 중 같은 호 아목 및 자목에 해당하는 것
다. ~ 라. (현행과 같음)
마.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 및 한방병원
바. ~ 사. (현행과 같음)
자.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2호의 수련시설(같은 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을 포함한다)
차. ~ 다. (현행과 같음)
파. (현행과 같음)

【별표 23】

관리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제26조제23호 관련)

※ 단, 4층 이하의 건축물에 한하며, 휴게음식점·제과점·일반음식점 및 숙박시설은 규칙 별표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지역에 한한다.
가. ~ 사. (현행과 같음)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9호의 의료시설 중 종합병원·병원·치과병원·요양병원 및 한방병원
자. (현행과 같음)
차.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3호의 운동시설

카. ~ 다. (생 략)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농업·임업·축산업·수산업용을 제외한다)

하. ~ 더. (생 략)

【별표 24】

입목본수도 조사방법 (제16조 관련)

1. 입목본수도 정의

(생 략)

2. 입목본수도 조사방법

가. (생 략)

나. (1) ~ 나. (3) (생 략)

(4) 가슴높이직경 측정

① 가슴높이직경의 측정은 경사지에서는 위쪽에서, 평지에서는 임의의 방향에서 지상 1.2미터 (가슴높이)의 높이를 측정한다. 측정은 교목, 관목, 죽(대나무)을 구분하지 않고 수고 1.2미터 이상이면서 직경 1센티미터 이상인 모든 수목을 대상으로 한다.

② ~ ⑤ (생 략)

(5) (생 략)

3. 입목본수 기준표 (생 략)

[예 시] (생 략)

4. <신 설>

○ <신 설>

카. ~ 다. (현행과 같음)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8호의 창고시설

하. ~ 더. (현행과 같음)

【별표 24】

입목본수도 조사방법 (제16조 관련)

1. 입목본수도 정의

(현행과 같음)

2. 입목본수도 조사방법

가. (현행과 같음)

나. (1) ~ 나. (3) (현행과 같음)

(4) 가슴높이직경 측정

① 가슴높이직경의 측정은 경사지에서는 위쪽에서, 평지에서는 임의의 방향에서 지상 1.2미터 (가슴높이)의 높이를 측정한다. 측정은 교목, 관목, 죽(대나무)을 구분하지 않고 수고 1.2미터 이상이면서 직경 6센티미터 이상인 모든 수목을 대상으로 한다.

② ~ ⑤ (현행과 같음)

(5) (현행과 같음)

3. 입목본수 기준표 (현행과 같음)

[예 시] (현행과 같음)

4. 기타사항

○ 입목본수도 조사방법(제16조 관련)에서 명시하지 않은 사항은 「산지관리법」에 따른다.

[관 계 법 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관광객의 야영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서도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야영장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개정문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박근혜 (인)

2016년 3월 22일

국무총리 황교안
국무위원 국토교통부 장관 강호인

◎대통령령 제27052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5 제2호에 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파.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별표 18 제2호에 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하.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29호의 야영장 시설

부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개정 2016.2.1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28. 장례식장[의료시설의 부수시설(「의료법」 제36조제1호에 따른 의료기관의 종류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29. 야영장 시설

「관광진흥법」에 따른 야영장 시설로서 관리동, 화장실, 샤워실, 대피소, 취사시설 등의 용도로 쓰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300제곱미터 미만인 것

관광진흥법

[시행 2016.3.23.] [법률 제13594호, 2015.12.22., 일부개정]

제2장 관광사업

제1절 통칙

제3조(관광사업의 종류) ①관광사업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7.7.19., 2015.2.3.>

3. 관광객 이용시설업 : 다음 각 목에서 규정하는 업

가. 관광객을 위하여 음식·운동·오락·휴양·문화·예술 또는 레저 등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어 이를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2종 이상의 시설과 관광숙박업의 시설(이하 "관광숙박시설"이라 한다) 등을 함께 갖추어 이를 회원이나 그 밖의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다. 야영장업: 야영에 적합한 시설 및 설비 등을 갖추고 야영편의를 제공하는 시설(「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마목에 따른 청소년야영장은 제외한다)을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관광진흥법 시행령

[시행 2016.3.23.] [대통령령 제27044호, 2016.3.22., 일부개정]

3. 관광객 이용시설업의 종류

다. 야영장업

- 1) 일반야영장업: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야영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 2) 자동차야영장업: 자동차를 주차하고 그 옆에 야영장비 등을 설치할 수 있는 공간을 갖추고 취사 등에 적합한 시설을 함께 갖추어 자동차를 이용하는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업

2016년 국가안전대진단 실시!(2016. 2. 15. - 4. 30.)



경 상 남 도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사항 알림

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2962호(2016.03.22)와 관련됩니다.
2. 국토교통부에서는 관광객의 야영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보전녹지지역 및 보전관리지역에서도 「건축법 시행령」에 따른 야영장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대통령령 제27052호, '16.3.22 공포·시행)을 개정하였습니다.
3. 이에 개정내용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시군 담당자들은 업무처리에 차질 없도록 하여 주시고, 「관광진흥법」에 따라 야영장업 등록제가 시행되고 있는 점을 감안 금번 개정내용에 따라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조속히 조례개정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국토계획법 시행령 개정문 1부. 끝.

경 상 남 도 지 사

수신자 창원시장(도시계획과장), 진주시장(도시과장), 통영시장(도시과장), 사천시장(도시과장), 김해시장(도시계획과장), 밀양시장(도시과장), 거제시장(도시계획과장), 양산시장(도시과장), 의령군수(건설도시과장), 함안군수(도시과장), 창녕군수(경제도시과장), 고성군수(도시디자인과장), 남해군수(도시건축과장), 하동군수(도시건축과장), 산청군수(경제도시과장), 함양군수(도시환경과장), 거창군수(도시건축과장), 합천군수(도시건축과장)

주무관 도시계획담당 도시계획과 전결 2016. 3. 25.
장

협조자 주무관

시행 도시계획과-4434 (2016. 3. 25.) 접수 도시건축과-12079 (2016. 3. 25.)

우 51154 경상남도 창원시 의창구 중양대로 300 경남도청, 도시계획과 (사립동) / <http://www.gsnd.net>

전화번호 055-211-4228 팩스번호 055-211-2619 / rt585@korea.kr / 대한민국 공개

생활주변 안전위해요소!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여 국가 안전대진단에 참여합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3.22.] [대통령령 제27052호, 2016.3.22., 일부개정]

제79조(개발진흥지구에서의 건축제한) ① 법 제76조제5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에 위반하여 건축물을 건축할 수 없으며, 지구단위계획 또는 개발계획이 수립되기 전에는 개발진흥지구의 계획적 개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② 법 제76조제5항제1호의2에 따라 지구단위계획 또는 관계 법률에 따른 개발계획을 수립하지 아니하는 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에서는 해당 용도지역에서 허용되는 건축물 외에 해당 지구계획(해당 지구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설치 및 환경오염 방지 등에 관한 계획을 말한다)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요건을 갖춘 건축물 중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다.

1. 계획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또는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배출시설의 설치 허가·신고 대상이 아닐 것

나. 「악취방지법」에 따른 배출시설이 없을 것

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 또는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장설립 가능 여부의 확인 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였을 것

2. 자연녹지지역·생산관리지역 또는 보전관리지역: 해당 용도지역에서 건축이 허용되지 아니하는 공장 중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것

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 전에 계획관리지역에 설치된 기존 공장이 인접한 용도지역의 토지로 확장하여 설치하는 공장일 것

나. 해당 용도지역에 확장하여 설치되는 공장부지의 규모가 3천제곱미터 이하일 것. 다만, 해당 용도지역 내에 기반시설이 설치되어 있거나 기반시설의 설치에 필요한 용지의 확보가 충분하고 주변지역의 환경오염·환경훼손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경우에는 5천제곱미터까지로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6.2.1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6.3.22.] [대통령령 제27052호, 2016.3.22., 일부개정]

③ 법 제77조3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이란 자연녹지지역을 말한다.
<신설 2016.2.11.>

④법 제77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지역에서의 건폐율은 각 호에서 정한 범위에서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시 또는 군의 도시·군계획조례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 <개정 2005.9.8., 2008.9.25., 2009.8.5., 2010.10.1., 2011.3.9., 2011.11.16., 2012.4.10., 2016.2.11.>

- 1. 취락지구 : 60퍼센트 이하(집단취락지구에 대하여는 개발제한구역의 지정및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2. 개발진흥지구: 다음 각 목에서 정하는 비율 이하
 - 가. 도시지역 외의 지역에 지정된 경우: 40퍼센트
 - 나. 자연녹지지역에 지정된 경우: 30퍼센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4] <개정 2016.2.11.>

**제1종일반주거지역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 (제71조제1항제3호관련)**

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7호의 공장 중 떡 제조업 및 빵 제조업(이에 딸린 과자 제조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공장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것

- (1) 해당 용도에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1천제곱미터 미만일 것
- (2) 「악취방지법」에 따른 악취배출시설인 경우에는 악취방지시설 등 악취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하였을 것
- (3) 차목(1)부터 (6)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다만, 도시·군계획조례로 「대기환경보전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및 「소음·진동관리법」에 따른 설치 허가·신고 대상 시설의 건축을 제한한 경우에는 그 건축제한시설에도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 (4) 해당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시장 또는 군수가 해당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근의 주거환경 등에 미치는 영향 등이 적다고 인정하였을 것